

한국과학고교육학회 1985년도 사업보고

1. 총회 1984. 12. 8 한국교육개발원
경과보고, 회장선거, 사업논의, 과학고교육박사학위자 기념품 전달 및 만찬
2. 임원회 2, 4, 6, 8, 10, 11월 4회
3. 연구모임
 - '84.12. 8 권재술의 과학학습의 사후 효과 등 4명 발표
 - '85. 2. 21 미국의 국가적인 과학학력 평가 과정
판과루 지원하에 Trowbridge 교수 강연 (2.18 - 2.22까지 체류
각종 활동)
 - '85. 6. 1 과학고교육 연구의 영역과 방법
 - '85. 6. 22 과학고교육 평가와 실태 분석
영국문화원 지원하에 Black 교수 강연 (6.17 - 6.22까지 체류 활동)
문교부, 과학기술진흥재단, 시청각사, 금성출판사 지원
 - '85.11.16 인천에서 초등과학고교육의 발전 연구모임
4. "한국과학고교육학회지" 제 IV권 100페이지 300부 5월 발행 배포
5. "과학고교육소식" 발간, 2, 4, 6, 8, 10, 11, 12월
6. 학회지 "투고 규정" 마련 ('85년 11월 과학고교육소식에 게재)
7. 학회 종신 회원제 5만원 결정 85년 12월말까지 20명 (100만원 저금)
8. "과학고교육연구기금" 설정 (회사금 70만원 저금)

한국과학고교육학회 1986년도 사업(안)

1. 총회
 - 2.25 '85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회칙개정, '86년도 사업 및 예산
 - 12.20 '86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임원개선, '87년도 사업 및 예산
2. 임원회 1, 3, 5, 7, 9, 11 (6회)
3. 연구모임
 - 1. 9 "국가의 위위" 전후의 미국 학교 과학고교육과 과학고사교육
Dr. Roy Ward (Northern Iowa 대학 교수)
 - 2.25 과학고교육 국제활동 보고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 4월 한국 과학고교육의 이념과 목표 설정
 - 9월 한국 과학고교육의 문제 분석과 개선 과제 *AI 한국과학고교육 연구 2인 (적영, 석영)*
 - 11월 한국 과학고교육의 장·단기 진흥방안
4. "한국과학고교육학회지" 제 V권 100페이지 300부 발행
5. "과학고교육소식" 1, 3, 5, 7, 9, 11 6회 발행
6. "과학고교육용어집" 발간 (출판사 지원)
7. 학회 회원 주소록 작성 및 배포
8. 회원 300명, 종신회원 100명 돌파
9.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압회 (1월)
10. "과학고교육연구기금" 500만원 확보

이시원 → 불리 Rule

현우 - 현우씨

한국 과학고 교육학회 회칙(안)

VI

86.2.25

제 1조 . 본회는 한국 과학고 교육학회(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약칭 KARSE)라 칭한다.

제 2조 . 본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3조 . 본학회는 과학교육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하여 과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한다.

1. 과학교육의 학술적 회합 개최
2. 과학교육의 학술지와 교육자료의 발행
3. 과학교육의 특수 연구과제 수행
4. 과학교육관계 각종 학회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촉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4조 . 본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입회원서와 입회금 및 ~~당해년도~~ ^{3년}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계된 특별한 업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감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 본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다수, 감사 2명, 감사약관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임명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하며 학회의 중요 사항을 다룬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학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보고 한다.
6.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무, 편집, 사업, 설비, 재무, 연락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 6조 . 본학회는 총회, 이사회, 감사회를 통해 운영한다.

1. 총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전년도 사업결과의 결산 신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기타 중요 사항을 다룬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년 2회이상 소집하여 필요한 의안을 다룬다.
3. 감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합하여 사업 활동을 집행한다.

제 7조 . 본학회의 경비는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조 . 본학회는 지역별 지부와 교육기능별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제 9조 .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 본학회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1. 본회칙은 1976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2. 본회칙은 1980년 2월 25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86년도 예산 (안)

수입	입회비	59000원 × 150명	7509000
	년회비	59000원 × 200명	190009000
	기타	이월금, 이자 등	1109000
		계	198009000
지출	학회지	100쪽 300부	8009000
	소식발간	109000 × 0회	009000
	총회	209000 × 2회	409000
	인연회	109000 × 6회	009000
	연구모임	1009000 × 5회	5009000
	용어집 발간		1009000
	주소록 작성		1009000
	사무용품 및 우송비 기타		2009000
		계	198009000

특별회계 *

종신회비	509000 × 00명	= 490009000
연구기금	후원 모금	493009000
	계	893009000

(연구모임에 특별 외부 지원과 비용은 별도 처리할 것임)

현재 저금

종신회비	509000 × 2명	= 190009000
연구기금		7009000
	계	197009000